

2024년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

부산광역시와 (재)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“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”에 따라 부산 거주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「2024년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(디딤돌 카드+)」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년 3월 27일

부산경제진흥원장

1

모집개요

- 모집기간 : 2024. 3. 29.(금) 13:00 ~ 4. 12.(금) 18:00까지
- 모집인원 : 1,000명
- 지원내용 : 사회진입활동비 최대 180만원 지원(월 30만원×6개월)
 - 월 1회 지급, 미사용 포인트 매월 말일 24시에 소멸
 - 지원항목 : 취·창업 활동에 필요한 직·간접 비용 최대 180만원

| | |
|-----|--|
| 직접비 | - 80만원 이상 사용 필요(단,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필수 지출) - 학원(인터넷) 강의 수강료, 도서 구입비, 시험 응시료, 면접 복장 구입비 등 |
| 간접비 | - 100만원 한도 내 지출 가능 - 식비, 취업 관련 숙박·교통비, 체력단련시설 이용료, 문구류 구입비 등 |

- * (취업성공금 지급) 5개월 이내 취·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0만원 1회 지원(조건부 지급)
- * (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) 맞춤형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

○ 지급방법

- ① 전용 체크카드 발급 → 활동보고서 확인 후 매월 1일 포인트 사전 지급
- ② 사행성 업종,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
- ③ 현금화 불가능한 클린카드

- (지원체계) 카드 신청·발급(청년↔은행) ▶ 포인트 지급(은행→청년) ▶ 포인트 사용(청년)
 - ▶ 월별 포인트 사용 대금 지급(부산경제진흥원→은행)

- (사용항목) 취·창업 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 결제 제한, 제한 업종 외 모두 결제 가능

- * (제한 업종 예시) 주점, 유흥주점, 주류판매점, 노래방, 나이트클럽, 카지노, 안마시술소, 숙박업소, 귀금속, 애완동물, 총포류 판매 등

- 신청방법 : 디딤돌카드 홈페이지(<http://youthdidimdol.kr/>) 온라인 접수
- 제출서류 : 서류 발급방법 관련하여 반드시 **【붙임 1】 【붙임 2】 【붙임 3】** 숙지 후 제출
- 선정방법 : 1차 결격심사 / 2차 정량평가 합산, 고득점자순 선정
 - 정량평가 : 가구소득(90점)+미취업 기간(10점)+자원봉사 가점(0.5점)
 - ※ 동점자는 '가구소득 저소득자' → '미취업 기간 장기자' 순으로 선정
 - ※ 자원봉사 우수자 가점 부여 (공동체 의식 및 사회참여 촉진)
 - 「1365자원봉사포털」에서 최근 3년 기준(2021.1.1 ~ 2023.12.31) 인증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가점(0.5점) 부여

2

자격요건 (공고일 2024. 3. 27. 기준)

- 거주지 :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 중인 자(주민등록 기준)
- 나이 : 18세 ~ 39세 (1984. 1. 1. ~ 2006. 12. 31.) (생애 1회 지원)
- 학 력 : 최종학력 졸업(중퇴·제적)자 (학력무관)
 - 재학생 참여불가(유예자 및 휴학생, 야간대학(원) 등) 단, 대학원 수료자는 수료증 제출 시 지원가능
 - 방송통신대학/사이버대학 재학생,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학점은행제 재학생 지원가능
 - 해외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후 지원
- 미취업 : 고용보험(상용)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,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
 - 고용보험(상용) 가입자 중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하며,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30시간 미만 근무 여부 증빙해야 함
 -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지원 제외
- 소 득 :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 - 3개월(2023년 10월 ~ 12월) 간 가구원의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(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입액)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충족 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**※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조회**
 - 1~2인 가구는 3인 가구의 기준으로 산정

| 가구원수 | 기준중위소득 150%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월/원)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
| 3인 | 6,653,000 | 237,913 | 206,359 | 242,216 |
| 4인 | 8,102,000 | 291,898 | 273,699 | 299,947 |
| 5인 | 9,497,000 | 346,067 | 335,569 | 359,887 |
| 6인 | 10,842,000 | 403,785 | 402,840 | 434,962 |
| 7인 | 12,162,000 | 434,962 | 436,179 | 476,875 |
| 8인 | 13,481,000 | 521,613 | 527,523 | 563,270 |
| 9인 | 14,800,000 | 563,270 | 570,140 | 625,329 |
| 10인 | 16,120,000 | 625,329 | 628,210 | 729,187 |

[표 1] 2023년 기준중위소득(150%) >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91호(2022.8.8.)

- (가구원 수 기준) 가족관계증명서 기준

- ▶ 미혼 : 부, 모, 본인
- ▶ 기혼 : 본인, 배우자, 자녀(자녀 수 만큼 추가)

- (소득 산정 기준)

- ▶ 최근 3개월('23.10월 ~ 23.12월) 건강보험료 월평균 부과액
- ▶ 미혼자 : 부·모·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
- ▶ 기혼자 : 본인·배우자·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
- ▶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'직장',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'지역'에 해당,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 또는 3개월 내 건강보험 변동이 있는 경우 '혼합'에 해당

<참고>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법

☞ (서류확인)

1. (필수) 가족관계 증명서 (제출 기준 : 붙임 1참조)
2. (필수) 소득산정 대상에 포함 되는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* 가구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탈락 처리

☞ (소득확인) 소득산정 대상에 포함된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 (또는 납입액)을 합산

| 구분 | 미혼 | 기혼 |
|---------|--|--|
| 소득확인 대상 | ▶ 신청인, 부, 모 (기준 : 붙임 1참조) | ▶ 신청인, 배우자, 자녀 |
| 필수 서류 | ▶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▶ 소득확인 대상 전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| ▶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▶ 소득확인 대상 전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|

☞ (참고사항)

- 가구소득 산정을 위한 가족관계 서류 제출사항 : [붙임1] 참고
- 기혼인 경우 배우자와 이혼, 사망 등 가구원이 아님을 증명할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미제출
- 기혼인 경우 자녀를 대리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

○기타: [지원제외 대상] 미해당자

지원제외 대상

※ 동시참여 제한(공고일 기준)

-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,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참여자
- 실업급여 수급자, 부산형 기초보장제 수급자, 생계급여 수급자(단, 주거, 교육, 의료 급여만 받는 경우 지원가능)
-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(단, 주 30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 지원가능) 등
- 정부지원(내일배움카드) 훈련 장려금 수급자(계좌발급 및 훈련참여는 가능하나, 훈련장려금 수급은 불가)
- 타 지자체 청년수당 참여자

※ 아래 해당자

- 2017~2018년 '청년 디딤돌 카드 사업' 1·2차 참여자
- 2019년 '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' 참여자
- 부산시 기존 디딤돌 카드+ 지원사업 수혜자(2020~2023년)
- 주 30시간 이상 상용 근로자(공고일 이후 퇴사자 불가), 사업자등록된 자
- 군 복무 중인 자(대체 복무 포함), 외국인

3

신청접수

○신청기간: 2024. 3. 29.(금) 13:00 ~ 2024. 4. 12.(금) 18:00까지

○제출방법: 디딤돌카드 홈페이지(<http://youthdidimdol.kr/>) 온라인 제출

-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암호(비밀번호) 해제 후 업로드 첨부(한 장 이상일 경우 PDF 합본 또는 파일 압축하여 업로드 등)

○제출서류: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4. 3. 27. 이후 발급분만 인정

| 제출서류 | | | 유의사항 |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필 수 제 출 | 온라인 작성 (디딤돌 카드 신청 홈페이지) | 참여 신청서 (신청자 기본정보) | 본인 | -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(한글 정자) - 신청자 오기 입력에 따른 피해는 구제불가(정확한 정보기입요망) |
| | | 구직활동계획서 | 본인 | - 매월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작성 |
| | | 개인 및 가구원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| 본인 및 가구원 | - 본인과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작성 ※ (미혼) 부+모+본인 작성 (기혼) 본인+배우자+자녀 작성 - 본인 및 가구원 미동의시 지원 불가하며,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탈락됨 ※ 가구원 포함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(한글 정자) |
| | 가족관계증명서 ⇒ 발급기준 상세 안내 : 붙임 1 첨부파일 필수 참조 | - | - | - 공고일 2024. 3. 27. 이후 발급분 제출 ※ 모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, 모든 가구원 포함 - (미혼) 부 또는 모 기준 상세증명서로 발급 - (기혼)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발급 |
| 해 당 자 만 | 136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| 주민등록등본 | 본인 | - 공고일 2024. 3. 27. 이후 발급분 제출 -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발급 (모든 정보 표시 되도록) ※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, 전입일/변동일 등이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 (수집근거: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43조의 2) |
| | | 최종입학 학교 졸업(제적·중퇴)증명서 | 본인 | - 본인의 최종학교 졸업(제적·중퇴)증명서 발급 ※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수료증명서 제출 -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- 해외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필요 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, 주 3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제출 ※ 본인의 인적사항, 근무장소, 근로시간 및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|
| | | 근로계약서 | 본인 | - 「1365자원봉사포털」에서 최근 3년 기준(2021.1.1 ~ 2023.12.31) 인증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제출 |

신청방법

- ① 디딤돌카드 홈페이지(<http://youthdidimdol.kr/>) 접속 > 신청하기 클릭
 - ② 부산일자리정보망 미가입자 : 로그인 하단 부분→회원가입 클릭→개인회원 가입(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) 권장
(부산일자리정보망 기존 회원 : 아이디/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※ 네이버, 카카오 간편로그인 시 신청불가할 수 있음)
 - ③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
 - ④ 구비서류 첨부 제출
- ※ 파일형식은 PDF 또는 JPG(JPEG) 유형으로만 제출(한글, MS워드, 보안파일 등 불인정)
※ 사진 촬영한 파일 업로드 시 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(저화질, 흔들림 등) 불인정 될 수 있음

4

선정기준

- 정량평가: 가구소득(90점)+미취업기간(10점)+자원봉사 가점(0.5점) 합산 고득점자순 선정
 - 가구소득: 3개월(2023년 10월 ~ 12월) 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으로 산정 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※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조회
 - * 미취업기간 : 고용보험 상실일 또는 최종학력 졸업(제적·중퇴 등) 중 최근 날짜부터 공고일까지
 - ▶ 졸업·제적증명서, 고용보험 가입 이력
 - ※ 저소득자 고득점 배점으로 점수는 아래의 표에 따라 구간별 차등 배점하며, 동점인 경우 ①'가구소득' 고득점자 ②'가구소득'(고득점 내) 저소득자 ③'미취업 기간' 고득점자 ④'미취업 기간(고득점 내)' 장기자 순 선정

| 가구소득 | 65% 이하 | 70% 이하 | 80% 이하 | 90% 이하 | 100% 이하 | 110% 이하 | 120% 이하 | 130% 이하 | 140% 이하 | 150% 이하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점수 | 90점 | 85점 | 80점 | 75점 | 70점 | 65점 | 60점 | 55점 | 50점 | 45점 |
| 미취업기간 | 3년이상 | | 2년~3년 미만 | | 1년~2년 미만 | | 6개월~1년 미만 | | 6개월 미만 | |
| 점수 | 10점 | | 8점 | | 6점 | | 4점 | | 2점 | |

- * 1~2인 가구는 3인 가구의 기준으로 산정
- ※ 자원봉사 우수자 가점 부여 (공동체 의식 및 사회참여 촉진)
 - 「1365자원봉사포털」에서 최근 3년 기준(2021.1.1 ~ 2023.12.31) 인증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가점(0.5점) 부여

5

최종선정자 발표 및 교육

- 최종선정자 발표일: 2024. 5월 중(예정)
 - 디딤돌 카드 홈페이지(<http://youthdidimdol.kr/>) 로그인하여 개별 선정여부 확인
 - 선정자 대상 개별 문자알림 발송예정
- 사전 온라인 교육: 2024. 5월 말(예정)
 - 대상: 최종선정자는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을 디딤돌 카드 홈페이지에 첨부해야 함(온라인 교육 미이수 시 선정취소)
 - 내용: 사업설명, 유의사항, 카드발급 신청,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요령 등 안내

6

선정취소 및 지원종료

- 선정취소 : 선정 자체를 취소
 - 온라인 교육 미이수, 첫 포인트 지급 전 참여자측의 선정 취소, 선정 과정상 하자 등
- 지원종료 : 지원종료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급 종료

1. 사유 발생 다음 월부터 지원금 미지급 해당 사유 : 취·창업, 자진포기, 구직활동 불가 (진학, 군입대, 장기해외체류 등), 구직활동보고서(카드사용 내역) 기한 내 미제출, 보고서 부실작성 등으로 2회차 경고 등
2. 사유 발생 다음 일부부터 지원금 미지급 해당 사유 : 타 시·도 전출, 유사사업 참여 (국민취업지원제도, 실업급여, 생계급여, 주 30시간 이상 정부직접 일자리사업, 훈련장려금, (타) 지자체 청년수당 참여자 등), 지원금 부정사용 등

※ 자격상실(중도포기)신고서 제출 필수

7

기타 유의사항

- 온라인 신청/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마감 기한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로든 추가 접수 받지 않음
- 신청 마감일 18시 00분에는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00분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(접수 마감 시간에는 접속폭주로 시스템이 다소 느려질 수 있음)
-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(기재착오), 구비서류 오제출(미제출)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, 서류 사실확인 의뢰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에서 탈락(선정취소,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음)
- 생계급여(부산형 기초보장제)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(주거·교육·의료 등)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
-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(타)지자체 동일·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개인 기본정보 변경 또는 자격 변동(상실) 시 자진 신고하여야 하며, 청년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음
- 선정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디딤돌 카드(계좌) 발급이 불가할 경우, 신청 취소될 수 있음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8

문의처

○문의처: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(☎. 051-600-1874, 1875)

【붙임 1】 가구소득 산정을 위한 가족관계 서류 제출사항

【붙임 2】 제출서류 발급방법

【붙임 3】 디딤돌 카드 Q&A

【붙임 1】

가구소득 산정을 위한 가족관계 서류 제출사항

| 구분 | 결혼 여부 | 부 | 모 | 제출서류 | 추가서류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필수 서류 | 미혼 | 생존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 | |
| | | 생존 | 이혼 후 관계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|
| | | 생존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|
| | | 생존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실종 증빙 서류 |
| | | 이혼 후 관계단절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|
| | | 이혼 후 관계단절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|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본인 전체내역) |
| | | 이혼 후 관계단절 | 이혼 후 관계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|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본인 전체내역)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|
| | | 이혼 후 관계단절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|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본인 전체내역) 실종 증빙 서류 |
| | | 사망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|
| | | 사망 | 이혼 후 관계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|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본인 전체내역) |
| | | 사망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| |
| | | 사망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실종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본인 전체내역) |
| | | 실종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실종 증빙 서류 |
| | | 실종 | 이혼 후 관계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|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본인 전체내역) 실종 증빙 서류 |
| | | 실종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실종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본인 전체내역) |
| | | 실종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| 실종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본인 전체내역) |
| | 기혼 | 배우자 생존 | |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| |
| | |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| |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| |
| | | 배우자 사망 | |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| |
| | | 배우자 실종 | |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| 실종 증빙 서류 |

【붙임 2】 제출서류 발급방법

| 구비서류 | 발급방법 |
|--|--|
| <p>※ 온·오프라인 발급서류 모두 가능 ※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확인 방법: 정부24(www.gov.kr) → 고객센터 → 민원발급지원 → 무인민원발급안내 → '설치장소'확인 - 무인발급기 이용 제출서류 발급 시 지문인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사자(본인·부·모·배우자 등)의 방문이 필요합니다.</p> | |
| <p>주민등록등본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 · 주민센터(무인발급기) ※ 공고일(2024. 3. 27.) 이후 발급분만 인정 ※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발급(모든 정보 표시되도록) |
| <p>가족관계증명서(상세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 · 주민센터(무인발급기) ※ 공고일(2024. 3. 27.) 이후 발급분만 인정 ※ 모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, 모든 가구원 포함하여 발급(일반, 특정증명서) ※ (미혼) 부 또는 모 기준 상세증명서로 발급 ※ (기혼)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발급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0056b3; color: white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 </div> <p>∨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신청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1.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.</p> <p> <input type="radio"/> 본인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입력 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red; font-size: 1.2em;"><미혼></p> </div> <p>∨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신청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#ccc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1.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.</p> <p>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본인 <input type="radio"/> 가족 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red; font-size: 1.2em;"><기혼></p> </div> <p>3. 일반증명서, 상세증명서, 특정증명서 중 선택해 주세요. 예시 2</p> <p> <input type="radio"/> 일반증명서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상세증명서 <input type="radio"/> 특정증명서 </p> |
| <p>졸업(제적) 증명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부민원포털 정부24 (www.gov.kr) · 주민센터(무인발급기) · 폐교대학 통합증명발급 서비스 (https://www.u-haksa.or.kr/) · 해당 학교 민원실 등 |
| <p>136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365자원봉사포털(https://www.1365.go.kr/) · 로그인 이후 나의 자원봉사 → 봉사정보 → 봉사참여 실적 → 확인서 출력 ※ 공고일(2024. 3. 27.) 이후 발급분만 인정 ※ 기간 설정 필수 (2021.1.1 ~ 2023.12.31) ※ 출력유형은 '봉사실적별'로 설정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※ 시간인증형 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(활동인증형 봉사활동 실적은 미인정) |

【붙임 3】 디딤돌 카드 Q&A

| 구분 | | 답변 |
|---------------|--|--|
| 공고 & 신청 | 1. 공고문은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? | ○ 디딤돌카드 홈페이지(http://youthdidimdol.kr/) ※ 다량의 민원전화로 인하여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공지사항에 공고문과 서류제출 방법이 첨부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공지내용을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. ○ 부산일자리정보망&부산청년플랫폼&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|
| | 2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| ○ 신청기간은 3. 29. (금) 13시 ~ 4. 12. (금) 18시까지로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, 우편 및 현장접수는 불가능합니다. ○ 신청방법 ① 디딤돌카드 홈페이지 접속(http://youthdidimdol.kr/) 접속 > 신청하기 클릭 ② 부산일자리정보망 미가입자: 로그인 하단 부분→회원가입 클릭→개인회원 가입(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) 권장 (부산일자리정보망 기존 회원: 아이디/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) ③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④ 구비서류 첨부 (모든 서류는 공고일(2024. 3. 27.)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- 발급일 확인 가능해야 함) - 해당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가 2장 이상일 경우 PDF 합본 또는 파일 압축 후 모든 서류를 함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. - 모든 서류는 '상세증명서' 기준으로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. (열람용, 미리보기 불인정) - (미혼) 부 또는 모 기준(상세) / (기혼) 본인 기준(상세) ⑤ 제출완료 |
| 신청 자격 | 1. 소득기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? | ○ 공고문 Page2. [표 1]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% 참고 바랍니다. - 3개월(2023년 10월 ~ 12월) 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. 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※건강보험공단 일괄조회 - 가구원수는 (미혼) 부+모+본인 / (기혼) 본인+배우자+자녀 기준으로 합니다. ※ 이혼 소송 중, 실종신고 등의 사유로 가구원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 본인이 증빙가능한 서류 구비하여 제출 (기혼 → 미혼 변경 / 기혼 유지 등의 사례) ※ 가구원의 사망, 관계단절, 실종 등으로 인한 소득산정대상 제외요청 관련 서류는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> 신청관련 Q&A > 「가족관계증명서 및 추가서류 첨부기준」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- 반드시 가구원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온라인 전자서명을 받아야 합니다. |
| | 2. 아르바이트 중 혹은 창업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? | ○ 상용보험 가입자 기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, 미취업자로 간주하므로 참여 가능합니다. 단, 근로시간 및 기간이 확인 가능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. ○ 사업자등록증(창업자) 소지자는 신청 불가하며, 창업지원 관련 사업 신청바랍니다. |
| 중복 참여 | 1.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? | ○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,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을 지원 받은 경우 ○ 청년구직활동지원금,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 받은 경우 ○ 타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 ○ 실업급여와 기초생활 수급(생계급여)의 경우 - 공고일(2024. 3. 27.) 기준으로 현재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지원 및 동시참여가 불가능합니다. |
| | 2.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? | |
| | 3. 타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을 지원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? | |
| | 4.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 | |
| | 5. 내일배움카드 지원이 종료되었는데 순차 지원받을 수 있나요? | ○ 순차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현재 내일배움카드 사업 수혜(계좌발급은 가능)종일 경우, 내일배움카드 사업 관련 훈련장려금(식비, 교통비 등) 수급은 불가능합니다. |

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6. 중복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 | ○ 타제도 중복 참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공고문 Page2 [지원제외 대상]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|
| 기타 | 1. 졸업증명서 관련 서류 | ○ 재학(재적, 휴학), 학위증(학점은행제는 가능), 성적증명서는 첨부 불가합니다. |
| | 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| ○ 가구원의 이름, 관계, 동의여부, 온라인 전자서명 등 필수사항 기입바랍니다. |
| | 3. 제출서류 관련 | ○ 공고일(2024. 3. 27.)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. ○ 제출서류에 비밀번호(암호)가 걸려있거나 정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불가하며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,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|